

근로감독의 현장에서 근로감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12.3.(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1월 5일(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 및 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인력 규모가 가장 크고, 사건 처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직무 등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등 감독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별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 필요성(성균관대 김홍영 교수)」과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이화여대 이승욱 교수)」을 중심으로 발제 후 자유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에 대하여 발제한 김홍영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근로감독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두고, 근로감독의 주요 기능, 권한 및 역량 증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법안 논의 시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감독 권한 지방 위임에 대하여 발제를 맡은 이승욱 교수는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협력,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노사단체 등 토론자들은 이번 제정안 발의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며,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위해 권한을 지방에 위임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라며,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제야 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어, 노동자도 사용자도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노동부’를 찾도록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홍순호 (044-202-7971)
			주무관	박근성 (044-202-7612)



- **일시** : '25.12.3.(수) 16:00~18: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사)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관
- **참석자**
 - [개회사] 고용노동부 장관
 - [축사] 김주영·김태선·박홍배 의원,
경사노위원장, 한국경총 전무, 한국노총 사무총장
 - [좌장] 이영범 교수(건국대)
 - [발제]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이승욱 교수(이화여대)
 - [토론]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정길채 기후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
김태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 **진행 순서**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05~16:30	'25	■ 개회 및 국민의례 ■ 개회사: 고용노동부 장관 ■ 축 사: 김주영·김태선·박홍배 의원. 경사노위원장, 한국경총 전무, 한국노총 사무총장	
16:30~16:35	'5	장내 정리	진행: 좌장 (이영범 교수)
16:35~17:05	'30	【발제1】 김홍영 교수(15분) - 근로감독행정 법제화 관련 【발제2】 이승욱 교수(15분) - 감독권한 지방위임 및 ILO 협약	
17:05~17:35	'30	【지정토론】 7명 (1인당 약 4분)	
17:35~17:55	'20	【질의응답】 전 참가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55~18:00	'5	폐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독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축사를 맡아주신
김주영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님,
그리고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와 이영범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 서울고용노동청은
1963년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소로 개소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곳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역시 이곳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고,
봉제공장에 대한 감독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1957년 30명의 근로감독관으로 시작한 감독 행정이
2025년 기준 3천여 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더구나 감독 행정은 대격량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2천 명의 근로감독관이 증원되고,
권한은 지방정부로까지 확대될 것이며,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로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서
업무의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 행정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70여 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제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이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①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별도법이 제정되는
첫 사례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인원 규모도, 사건 처리 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의 위상을 확고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두 번째로, 이 법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중앙-지방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감독하면,
사업주는 노동법을 몰라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어지고,
노동자는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충실히 제도화하면, ILO 협약에서 강조하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감독 행정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이 법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독 행정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도움을 주는 신뢰받는 감독 행정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법 제정, 권한의 지방 위임 등
오늘 논의 되는 내용들은 모든 게 처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LO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제정 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